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7일, 김진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1.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8.24)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상정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12.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2.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진표의원)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법령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 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 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 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사업 타당성조사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구나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험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역시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선춘)

개정안은 ①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개발 이후 무기체계 양산 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며, ③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사업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관리¹⁾의 일환으로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시설 신규사업의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²⁾, 대규모 국방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사전 분

-
- 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 (사업타당성조사의 목적) 사업타당성조사는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시설 신규사업에 대해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하는 제도임³⁾.

사업타당성 제도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조⁴⁾에 따르면 동 지침이 「국가재정법」 제50조⁵⁾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⁶⁾의 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3) 출처: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주간국방논단 통권 제1376호)

4)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그러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국방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⁷⁾.

이에 개정안에서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⁸⁾.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⁹⁾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국방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2조¹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함. 「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¹¹⁾에 따르면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

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건설공사, 정보화 사업, 건축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방사업 중 건설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현재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구매사업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매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다목에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8) 안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9)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사업타당성조사총괄기관) ①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사전 총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산업연계성, 개발가능성, 재정수용성 등 분야별 또는 해당 사업 전체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에게 위탁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4조(채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관운영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 등 특정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임¹²⁾.

따라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¹³⁾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사업¹⁴⁾, 무기체계 구매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양산¹⁵⁾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12)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 상 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출연금을 받은 기관이 집행잔액을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사후 정산의무도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출연의 법적근거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4)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

15)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보통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양산 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를 생산함.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및 연구개발 종료 이후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 제출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인해 연구개발 종료 이후부터 양산사업 착수 이전까지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¹⁷⁾.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에 따라 연구개발 종료 및 양산사업 착수 간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단가가 상승하고 유희 설비·인력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 이후에 양산사업을 즉시 착수함으로써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량, 성능, 단가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16) 안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개발 이후 양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17) 방위사업청은 지휘소용차량 사업의 경우 2020년 11월에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2021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2년에 양산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기간인 6개월 동안 사업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실제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와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모두 수행한 사업의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 양산비 평균 변동률은 22% 수준임.

[표 1]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 양산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시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시기			④/② 변동률
	수행 시기	① 방위사업청 추정 양산비	② 사업 타당성조사 검토 양산비	수행 시기	③ 방위사업청 요구 양산비	④ 사업 타당성조사 검토 양산비	
지상전술 데이터링크체계	2011년	1,223.41	3,061.51	2015년	1,554.61	1,979.35	-35%
항공관제 레이더	2011년	-	608.50	2016년	736.63	725.59	19%
상륙기동헬기	2011년	8,440.69	8,554.30	2015년	9,646.11	9,731.84	14%
의무후송 전용헬기	2011년	2,731.61	2,341.60	2016년	2,822.46	2,665.34	14%
차기소부대 무전기	2011년	1,226.27	1,264.33	2015년	1,335.80	1,221.50	-3%
30mm 차륜형대공포	2013년	14,955.00	15,163.47	2019년	22,040.51	20,195.92	33%
81mm 박격포-Ⅱ	2013년	2,770.01	2,847.94	2019년	2,771.60	2,624.25	-8%
장애물개척전차	2013년	8,913.36	4,729.54	2017년	4,964.00	4,921.23	4%
차륜형 지휘소용차량	2014년	9,791.67	8,925.80	2021년	13,768.77	15,176.05	70%
경기관총-Ⅱ	2014년	2,886.15	2,728.26	2018년	2,752.34	2,050.79	-25%
해상감시레이더	2014년	1,265.92	1,337.76	2019년	1,722.41	1,532.40	15%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2015년	535.69	590.39	2019년	729.87	737.02	25%
평균 변동률④/② (증감절대값)	-						22%

또한, 변동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세부 비용항목별 증감으로 인해 총액 변동률이 낮은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81mm 박격포-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 양산비 변동률이 8%에 불과하지만, 주장비 항목의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 양산비 변동률은 -22%이며, 주장비 외 항목의 경우 그 변동률이 20%임.

[표 2]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간 양산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비용 항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시기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시기	
		① 방위사업청 요구 양산비 (②대비 증감)	②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양산비 (②대비 증감)	③ 방위사업청 요구 양산비 (②대비 증감)	④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양산비 (②대비 증감)
차기소부대 무전기	주장비	764.02 (-3%)	787.73 (-)	848.20 (+ 8%)	729.80 (-7%)
	주장비 외	462.25 (-3%)	476.60 (-)	487.60 (+ 2%)	491.70 (+ 3%)
	계	1,226.27 (+ 3%)	1,264.33 (-)	1,335.80 (+ 6%)	1,221.50 (+ 3%)
장애물 개척전차	주장비	7,942.73 (+ 86%)	4,265.07 (-)	4,250.22 (-0%)	4,395.18 (+ 3%)
	주장비 외	970.63 (+ 109%)	464.47 (-)	713.78 (+ 54%)	526.05 (+ 13%)
	계	8,913.36 (+ 88%)	4,729.54 (-)	4,964.00 (+ 5%)	4,921.23 (+ 4%)
81mm 박격포-Ⅱ	주장비	1,823.88 (-4%)	1,907.13 (-)	1,367.54 (-28%)	1,494.24 (-22%)
	주장비 외	946.13 (+ 1%)	940.81 (-)	1,404.06 (+ 49%)	1,130.01 (+ 20%)
	계	2,770.01 (+ 3%)	2,847.94 (-)	2,771.60 (+ 3%)	2,624.25 (+ 8%)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량, 성능, 단가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점과 양산 착수 시점 간 간극이 있어 세부 비용항목별 양산비용 변동 적절성 여부

등을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점에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¹⁸⁾.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 조사인원 1인당 사업건수가 최근 3개년 평균 1.1건으로 사업 수 대비 조사 인원이 적어 사업타당성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부 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기존의 한국국방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방 사업타당성조사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국방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한국과학기술

18)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 (사업타당성조사 총괄기관) ①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사전 총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산업연계성, 개발가능성, 재정수용성 등 분야별 또는 해당 사업 전체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에게 위탁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기획평가원의 전문성을 국방 사업타당성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성일중의원)

개정안은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점과 양산 착수 시점 간 시차를 고려해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2. 1. .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시 시점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사업의 착수 이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의 정확한 인용을 위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며,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점과 양산 착수 시점 간 시차를 고려해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의2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의2제1항 중 “착수”를 “사업의 착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5호”로, “국방연구개발사업(개발 이후 양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 ----- ----- ----- ----- ----- ----- ----- -----사업의 착수----- ----- ----- ----- ----- ----- 1. 2. (개정안과 같음)

	3. 「<u>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u>」 <u>제2조제5항에 따</u> <u>른 국방연구개발</u> <u>사업(개발 이후</u> <u>양산을 하는 경</u> <u>우에는 해당 연</u> <u>구개발사업의 사</u> <u>업타당성조사에</u> <u>포함하여 실시한</u> <u>다)</u> ② <u>국방부장관 및</u> <u>방위사업청장은 제</u> <u>1항의 규정에 따른</u> <u>사업타당성조사 관</u> <u>련 연구를 다음 각</u> <u>호의 자를 지정하</u> <u>여 수행하게 하여</u> <u>야 한다. 다만, 효</u> <u>율적인 조사를 위</u> <u>해 필요한 경우 국</u> <u>방부장관 및 방위</u> <u>사업청장은 기획재</u> <u>정부장관과 협의하</u> <u>여 수행기관을 변</u> <u>경하거나 추가로</u>	3. ----- ----- <u>제2조제5호-----</u> <u>---국방연구개발</u> <u>사업</u>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	--	--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
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
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
법」에 따른 한
국 과학기술기 획
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
2항에 따른 연구수
행을 위하여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
결하여 연구의 수
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행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

	<u>재정부장관이 정한</u> <u>다.</u>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 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신 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 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 업의 착수 이전에 사업의 추진 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 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 체계사업</u> <u>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 매사업</u> <u>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 방연구개발사업</u> <u>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를 다음 각 호 의 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 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u>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